

202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규대비표(안)

< 교원양성연수과 >

※ 우측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 사항임(오타자/ 띄어쓰기/ 단순 문구 수정/ 법령 현행화 등 제외)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	담당자 전화번호	0	활용 안내 ▶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입력·정정·취소 등 교원자격 관련 업무 문의는 나이스 사용자지원서비스(help.neis.go.kr) 또는 나이스 자격업무 담당자(☎ 053-714-03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활용 안내 ▶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입력·정정·취소 등 교원자격 관련 업무 문의는 나이스 사용자 지원서비스(help.neis.go.kr) 또는 나이스 자격업무담당자(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 044-410-55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현행화
2	교사 자격기준	6	Tip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의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4호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시·도 교육청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신청 가능	6	Tip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제3호, 제5호, 제7호,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의 경우, 양성과정으로 승인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하고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신청 가능	내용 명확화
3	담당자 전화번호	32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 대학의 교명이 변경된 경우 '기관부호'를 대학에서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기관부호 정정 요청을 하고, 나이스 업무시스템 자격업무담당자(☎053-714-0233)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받아야 함	32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 대학의 교명이 변경된 경우 '기관부호'를 대학에서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기관부호 정정 요청을 하고, 나이스 업무시스템 자격업무담당자(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044-410-5570)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받아야 함	담당자 전화번호 현행화
4	담당자 전화번호	38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 NEIS에 교원자격증 등재가 누락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 자격 발급대장(민원인이 열람 신청)을 증빙하여 해당 대학에서 교육부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714-0339)에 공문으로 등재 요청 → NEIS등재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가능	38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 NEIS에 교원자격증 등재가 누락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 자격 발급대장(민원인이 열람 신청)을 증빙하여 해당 대학에서 교육부(디지털교육기반과, ☎044-410-5570)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3-714-0577)에 공문으로 등재 요청 → NEIS등재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가능	담당자 전화번호 현행화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5	고시 주요변경 사항	67	(신설)	67	제2025-33호 (2025. 12. 11.) ■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필수 과목(상담실습) 지정 ※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3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종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서 '상담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5-33호 (2025.12.11.) 개정 추가
6	교과교육 영역	68	다. 교과교육영역 1) 교수요목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교과별 AI 디지털교과서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진단-수업-평가 등 교과지도의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④, ⑤, ⑥ (생략) ■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학습자 참여 중심의 미래형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 등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 각 교과별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법 등을 포함하여 교과목 편성·운영	68	다. 교과교육영역 1) 교수요목 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삭제), 디지털 리터러시, AI·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한 진단-수업-평가 등 교과지도의 전과정에 걸친 AI·디지털 활용 교수 학습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④, ⑤, ⑥ (생략) ■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학습자 참여 중심의 미래형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 AI·디지털 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 등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삭제)	「초·중등교육법」 (2025. 8. 14.) 개정 사항 반영
7	교직이론 영역	71	○(신설)	71	○ 교직이론 과목 중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 학기 개설을 권장함 ○ 교직이론 과목 중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 학기 개설을 권장함(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5~'29) 안내(학교폭력대책과-1383, 2025.5.9.))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 관련, 예비 교원 대상 교직과목의 생활지도 관련 내용 강화 필요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8	교직이론 영역	73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 ③ 교육과정 디지털 역량 함양 ④ 교육평가 ■ <u>디지털·AI 교육 환경</u>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u>AI 디지털교과서</u>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매체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방법에 중점을 둔다. ■ <u>AI 디지털교과서</u> 등 <u>디지털·AI 교육 환경</u> 에 맞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73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 ③ 교육과정 AI·디지털 역량 함양 ④ 교육평가 ■ AI·디지털 교육 환경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AI·디지털 교육자료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매체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방법에 중점을 둔다. ■ AI·디지털 교육자료 등 AI·디지털 교육 환경 에 맞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2025. 8. 14.)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
9	교직이론 영역	73	⑨ 생활지도 및 상담 ■ 학생의 발달특성,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이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사회정서교육의 내용 및 핵심 역량을 포함한다.	73	⑨ 생활지도 및 상담 ■ 학생의 발달특성,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이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사회정서교육의 내용 및 핵심 역량(자기관리, 공감,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내용 구체화
10	교직소양 영역	74	② 교직실무 ■ 교직윤리 영역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 교직원 등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74	② 교직실무 ■ 교직윤리 영역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 교직원, 민주시민 소양 등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관련,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반영
11	교직소양 영역	74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생략) ③ 학생생활문화는 학생의 생활과 다문화 학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문화의 조성, 다문화학생의	74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생략) ③ 학생생활문화는 학생의 생활과 이주배경학생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문화의 조성, 이주배경학생 의	용어 변경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특성과 지도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④ 디지털 교육 ■ 교사로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 이해', '디지털 교과 융합교육', '디지털 활용 교육', '디지털 윤리'를 학습하여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로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특성과 지도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④ 디지털 교육 ■ 교사로서 AI·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하고, AI 기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디지털의 이해', 'AI·디지털 교과 융합교육', 'AI·디지털 활용 교육', 'AI·디지털 윤리'를 학습하여 이를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로서 AI·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학습하고, 이를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2	사서교사 (2급) 교육실습 면제	76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2) (생략) ④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6항) (중략) ※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21.12.13.)'에 따라 대학의 여건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실습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 교직과목과 연계할 수 있다.	76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2) (생략) ④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고시 제6조제6항) ※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부칙 제10조에 따라 현행 「도서관법」 제43조를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 학교현장실습은 학기제 운영 가능하며, 이때 전공, 교직과목과 연계 가능(고시 제6조제11항)	법률 개정 사항 반영
13	정원 운영 지침	93	○(신설)	93	※ 순수외국인에 대한 별도 정원(10% 가능) 허용 규정은 2027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을 통해 "삭제" 예정 안내 ○ 법령에 따른 정원관리 철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정원에 대하여 임의로	'2026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 반영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 참고 문서 ▶ 교원복지연수과-6280('13.11.27.), 교원양성연수과-5256('18.11.20.)		확대·축소하는 행위 일체 금지 ※ 부적정 운영 시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참고 공문 ▶ 교원복지연수과-6280('13.11.27.), 교원양성연수과-5256('18.11.20.) 교원양성연수과-1406, '26.3.6.)	
14	교육대학원	110	○ 교육대학원의 '양성', '재교육' 과정 구분 •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은 교원양성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전공(영양교사 등 일부 제외)은 신규교원 양성은 불가능한 재교육과정으로 승인되었음	110	○ 교육대학원의 '양성', '재교육' 과정 구분 •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은 교원양성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전공(영양교사 등 일부 제외)은 신규교원 양성은 불가능한 재교육과정으로 승인되었음 ※ 2026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이후부터는, 2000년 이전에 설치 인가된 전공이라도 특수교사 양성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성과정 전환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결과에 따라 '양성' 또는 '재교육' 과정으로 구분함(교원양성연수과-1406, '26.3.6.)	내용 명확화, '2026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 반영
15	교육대학원	111	○(신설)	111	교육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 유의사항 ○ 전공에 따른 '양성' 또는 '재교육' 과정 승인사항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함	내용 명확화
16	교육대학원	113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1)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이 있다.	113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1)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이 있다. 다만, '2026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이후부터는,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교원양성기능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양성과정으로 전환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교육 과정으로 승인 받은 전공은 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다.	내용 명확화, '2026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 반영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7	자격증 수여	124	④ 자격증 수여 ㉠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한다.	124	④ 자격증 수여 ㉠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한다. ※ 현직 교원의 경우, 소속된 시·도교육감에게 신청	내용 명확화
18	교육대학원	139	⑤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표시를 위한 이수기준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2) 일반 원칙 ㉠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으로서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제3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하도록 하고, 각각 해당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139	삭제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2) 일반 원칙 ㉠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으로서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제3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하도록 하고, 각각 해당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026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이후부터는,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교원양성기능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양성과정으로 전환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교육 과정으로 승인 받은 전공은 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다.	내용 명확화, '2026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 반영
19	고시 주요변경 사항	140	3)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부여방법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전공별 무시험검정 검정기준 ※ (신설)	140	3)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부여방법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전공별 무시험검정 검정기준 ※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부에서 수강한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자격증에 장애유형을 표시하기 위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 고시 (제2025-10호 (2025.3.4.)) 개정 관련 상세 안내 추가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20	고시 주요변경 사항	144	(신설)	144	4 시각·청각장애 관련 과목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내 장애유형 표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025.3.4.)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제도의 성격 ① 특수교사로서 필요한 기본 역량과 함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시각·청각 장애 관련 과목을 15학점 이상(대학원의 경우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에 해당 장애 유형을 표시한다. ② 특수교사 자격증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교사가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만을 교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의 교육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나. 장애 유형별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① 교원양성기관은 기관의 여건 및 판단에 따라 예비교사의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개설 가능 교과목 예시안 <table><tr><th>장애유형</th><th>개설 가능 교과목</th></tr><tr><td>시각장애</td><td>시각장애학생교육(필수), 점자(필수), 보행,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시각중복장애학생 교육, 저시력 학생 교육,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피질시각장애학생 지도, 시각장애아동 심리, 시각장애학생 진단평가, 시각장애 영유아교육, 시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시각장애학생 예체능교육, 시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td></tr><tr><td>청각장애</td><td>청각장애학생교육(필수), 수어(필수), 음성언어 지도, 청능훈련,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농문화의 이해, 청각장애아동 심리, 청각보조기기 활용, 청각학 기초, 언어학 기초, 청각장애아동 문해교육, 청각장애학생 디지털교육, 청각장애학생 예체능교육, 청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td></tr></table> ③ '시각장애'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교육'과 '점자'를, '청각장애'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교육'	장애유형	개설 가능 교과목	시각장애	시각장애학생교육(필수), 점자(필수), 보행,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시각중복장애학생 교육, 저시력 학생 교육,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피질시각장애학생 지도, 시각장애아동 심리, 시각장애학생 진단평가, 시각장애 영유아교육, 시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시각장애학생 예체능교육, 시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청각장애	청각장애학생교육(필수), 수어(필수), 음성언어 지도, 청능훈련,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농문화의 이해, 청각장애아동 심리, 청각보조기기 활용, 청각학 기초, 언어학 기초, 청각장애아동 문해교육, 청각장애학생 디지털교육, 청각장애학생 예체능교육, 청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교육부 고시 (제2025-10호 (2025.3.4.)) 개정 관련 상세 안내 추가
장애유형	개설 가능 교과목											
시각장애	시각장애학생교육(필수), 점자(필수), 보행,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시각중복장애학생 교육, 저시력 학생 교육,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피질시각장애학생 지도, 시각장애아동 심리, 시각장애학생 진단평가, 시각장애 영유아교육, 시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시각장애학생 예체능교육, 시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청각장애	청각장애학생교육(필수), 수어(필수), 음성언어 지도, 청능훈련,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농문화의 이해, 청각장애아동 심리, 청각보조기기 활용, 청각학 기초, 언어학 기초, 청각장애아동 문해교육, 청각장애학생 디지털교육, 청각장애학생 예체능교육, 청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과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위 예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시각·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④ 예시안에 제시된 과목명과 실제 대학에서 개설하는 강의명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과목이 시각·청각장애 관련 과목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목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점자 관련 과목 개설 시 '점자', '점자지도', '점자의 이해' 등의 과목명 활용 가능 ⑤ 점자, 수어 등 단일 강의 개설만으로는 예비교사의 시각·청각장애 학생 교육 전문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⑥ 교원양성기관은 장애 유형별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점 이수 지원을 위해 대학별 자체 과목 개설, 대학 간 학점 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⑦ 시각·청각장애 관련 과목 이수학점은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시각·청각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내에서 장애 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21	순수외국인 별도 정원	161	나.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중략)~ 기재하면 됨.	161	나.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중략)~ 기재하면 됨. 단, 순수외국인에 대한 별도 정원(10% 가능) 허용 규정은 2027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을 통해 "삭제" 예정 안내	
22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162	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162	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와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의미는?	문의가 많은 내용 반영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양성과정으로 승인된 교육대학원을 의미함(재교육과정으로 승인된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이 없음)																																											
23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172	Tip: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 반영 권고 사항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권고 사항</th><th>비고</th></tr></thead><tbody><tr><td>1</td><td>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td><td>「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td></tr><tr><td>3</td><td>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td><td>「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td></tr><tr><td>5</td><td>(추가)</td><td></td></tr><tr><td>5</td><td>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td><td>교원양성연수과-1356(2018 33.22.)</td></tr><tr><td>...</td><td>(중략)</td><td></td></tr><tr><td>17</td><td>AI 관련 내용(인공지능 교육 등)</td><td>교원양성연수과-3266(2021 .06.16)</td></tr></tbody></table>	구분	권고 사항	비고	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3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5	(추가)		5	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	교원양성연수과-1356(2018 33.22.)	...	(중략)		17	AI 관련 내용(인공지능 교육 등)	교원양성연수과-3266(2021 .06.16)	172	Tip: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 반영 의무 및 권고 사항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의무 및 권고 사항</th><th>비고</th></tr></thead><tbody><tr><td>1</td><td>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1시간)</td><td>「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td></tr><tr><td>3</td><td>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td><td>「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td></tr><tr><td>5</td><td>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td><td>「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td></tr><tr><td>6</td><td>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td><td>교원양성연수과-1356(2018 33.22.)</td></tr><tr><td>...</td><td>(중략)</td><td></td></tr><tr><td>18</td><td>AI 관련 내용(인공지능 교육 등)</td><td>교원양성연수과-3266(2021 .06.16)</td></tr></tbody></table> 5번 항목 추가 후, 6~18 항목 번호 변경	구분	의무 및 권고 사항	비고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1시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5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6	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	교원양성연수과-1356(2018 33.22.)	...	(중략)		18	AI 관련 내용(인공지능 교육 등)	교원양성연수과-3266(2021 .06.16)	법령 반영 등
구분	권고 사항	비고																																														
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3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5	(추가)																																															
5	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	교원양성연수과-1356(2018 33.22.)																																														
...	(중략)																																															
17	AI 관련 내용(인공지능 교육 등)	교원양성연수과-3266(2021 .06.16)																																														
구분	의무 및 권고 사항	비고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1시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5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6	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	교원양성연수과-1356(2018 33.22.)																																														
...	(중략)																																															
18	AI 관련 내용(인공지능 교육 등)	교원양성연수과-3266(2021 .06.16)																																														